##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3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이춘석·권성동·정준호

신영대 · 김윤덕 · 윤준병

위성곤 • 안호영 • 윤종군

이원택 • 정동영 • 이성윤

박희승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

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

#### 법률 제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결하기"를 "해결하고,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 형발전을 실현하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및"을 "·특별자치도 및"으로, "도시와"를 "도시 또는 지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및 도"를 "·도 및 특별자치 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제1조(목적)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u>해결하기</u>	<u>해결하고,</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		
목적으로 한다.	<u> 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u>		
	<u>.</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	1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u>및</u> 그 <u>도시와</u>	<u>•</u> 특별자치도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u> 및도시 또는 지역과</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			
	<u>.</u>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	2		
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	가		
시·특별자치시 <u>및 도</u> (이	<u>•도 및 특별</u>		
하 "시·도"라 한다)에 걸	<u> 자치도</u>		
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 아. (생 략) 3. (생 략)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적 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 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에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의 수립)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⑤ (현행과 같음)